

2. 建築法中 改正法律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第1993-65號 1993. 4. 27

1. 개정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

- 가. 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허가받아 공사를 먼저 완료한 건축물에 대하여 동별사용검사를 허용함.
- 나. 건폐율을 20퍼센트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에서는 6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.

2. 의견제출

이 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(참조: 도시국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